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송재혁 의원 외 28명
- 의안번호 : 제2784호
-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2. 제 안 이 유

- 생물다양성의 종합적·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유입주의 생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
- 나.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규정함(안 제4장)
- 다.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을 규정함(안 제26조)
- 라.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규정함(안 제27조)
- 마.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을 규정함(안 제28조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도 첨부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유입주의 생물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는 상위법인 「자연환경보전법」이 1991년 제정된 이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¹⁾되어 시행되고 있으며, 2004년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야생생물법”)이 제정²⁾되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.
- 한편,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생물다양성법”)은 2012년 제정³⁾되면서 생물다양성의 종합적·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지만, 현행 서울시 조례에 반영된 사항은 없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장(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)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1)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 서울특별시조례 제3580호, [시행 1999.3.20.] [1999.3.20., 제정]

2)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[시행 2005. 2. 10.] [법률 제7167호, 2004. 2. 9., 제정]

※ 법률 제명 변경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2.7.29.] [법률 제10977호, 2011.7.28., 일부개정]

3)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3.2.2.] [법률 제11257호, 2012.2.1., 제정]

- 세부적으로 안 제26조는 생물다양성법 제7조에 부합하도록 ‘서울시 생물 다양성전략’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3항은 동일 제명의 일부개정조례안(제2840호)의 내용을 반영하여 ‘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정 에 ‘녹색서울시민위원회’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됨(대안 반영).

안 제27조는 생물다양성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‘생태계서비스지불 체계약4)’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28조(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)는 서울시가 ‘유입주의 생물’, ‘외래생물’, ‘생태계교란 생물’, ‘생태계위해우려 생물5)’의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음.

4)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·관리, 경작방식의 변경,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, 습지의 조성,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

5)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
6의2. “유입주의 생물”이란 국내에 유입(流入)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(危害)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

7. “외래생물”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.

8. “생태계교란 생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
나.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
8의2. “생태계위해우려 생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

나.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